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1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5일

3.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제13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안 제14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가. 제출배경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 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그 내용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1.0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1.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12.29.
경기도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3.16.
충청남도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04.
전라북도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08.13.
전라남도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05.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12.31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제3호에서 정의한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는 법률 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음
- 재난의 범위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태풍·홍수·대설·가뭄 등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 등 광범위한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등의 보호 의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음

○ **안 제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원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대응해야 하는 재난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재난 발생시기와

내용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재난발생 시 그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안전을 위한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지원은 감염 및 재해위험에 노출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심리 상담 등 정신적 치료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법률 제9조³⁾ 및 제10조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였음

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하여 '22. 1. 7. ~ 1. 14.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
 - 안 제4조제2항 지원계획 수립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안 제14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계 위원의 위원회 참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1.11.19.시행)이 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이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조속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생 략) 3. <u>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u> 4.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조례안과 같음) 3. <u>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u> 4. (조례안과 같음)